

제12회 임시회

# 심 사 보 고 서

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 (안)

사 회 산 업 위 원 회

##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의원입니다.

구미시의회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개정조례(안)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(안)은,  
금년 1월 1일자로 도·농복합 형태의 시 발족 등 행정 여건의 변화와, 그동안 저소득층 전세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지원 사업기금이 관리되어 오던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지난 제11회 임시회시 구미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없어지게 됨에 따라, 저소득주민전세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지원 사업기금을 관리 운용할 특별회계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어,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지원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조례의 명칭 및 본문상의 저소득층"을 "저소득 주민"으로 하고, 전세 입주세대 선정을 위한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며, 또한

주택전세 계약시 시장 명의로 하던 것을 읍, 면, 동장 명의로 하도록 하고 세대당 주택전세 보증금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무이자로 하며,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따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
당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개정내용이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,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정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.

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!

아무쪼록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
감사합니다.